


# 제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

병원등록번호 : 1234567

위임하는 사람	성명	홍길동	주민번호	830123 - 1234567	연락처	1577-0675
	주소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번지				
위임받는 사람	성명	김순애	주민번호	641123 - 2154674	연락처	010-1234-5678
	주소	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1번지 명동빌라 OO생명보험(주) 보험심사팀				
<p><b>* 수진자의 질병 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임에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 및 부수를 정확하게 기재(☑)를 복수로 표기한 것은 복수 위임을 한 것으로 간주함)하고, □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</p>						
위임내용	필수 기재	☑ 진료과( <u>신경외과</u> ) / ☑ 제증명(아래 세부내역 기재) 또는 ☑ 자문의뢰				
	☑ 진단서( 2 부)	□ 소견서( 부)	□ 수술확인서( 부)	□ 입원 사실 증명서( 부)	□ 통원	
	□ 입원 확인서( 2 부)	□ 사망진단서( 부)	□ 출생 증명서( 부)	□ 기타( 부)		
	☑ 통원	□ 사체검안서( 부)	□ 사산 증명서( 부)	( )		
<p>☑ 기존에 발행된 제증명서 사본 발행만 원할 경우 □ ( )사본 ( 부)</p> <p>☑ 제증명 사본의 보존기한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의거 3년입니다. 진료과가 다를 경우에는 본 위임장을 각각 작성,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
위임사유						관계
<p>본인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, 본인의 ☑ 제증명서 발급(또는 ☑ 자문의뢰)권한을 상기와 같이 위임하며, 위임의사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제증명서에 대한 분쟁 및 자문의뢰(결과)에 대한 분쟁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(단, 일부과에서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있더라도 본인 또는 직계가족(배우자 포함)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9 년 6 월 1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임하는 사람 <u>홍길동</u> </p> <p>[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, 인감증명서와 다를 경우에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]</p>						
<p>구비서류 :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, 신청인의 신분증(추가 : 자문의뢰의 경우 회사 직원증)</p>						
<p>* 유의사항 * 다른 사람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에 본인의 동의 없이 추가적으로 글귀, 문자, 기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, 변조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, 위조·변조된 위임장을 통해 진료기록을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(사문서등의 위조·변조), 제234조(위조사문서등의 행사) 및 의료법 제88조(벌칙)에 의거 각 법률에 정한 형에 의해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</p>						